

#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관한 특례 규정

□ 2015.08.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6조(재임용조건) 및 제22조(교원업적평가)에서 정한 재임용 약정조건에 미달한 교원과 교원인사규정 제18조(승진), 제19조(승급)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교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특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조치의 적용대상)** 본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전임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업적평가 재임용 약정조건 가운데 연구 업적 부족, 총점 부족 등 재임용 또는 재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임용 연장사유를 인정받은 교원
2. 승진 최소기준 미달로 인하여 연속하여 5회 이상 승진에서 누락한 교원
3. 호봉제 교원 가운데 승급기준 미달로 인하여 연속하여 3회 이상 승급에서 누락한 교원

**제3조(재임용 연장사유의 인정)** 제2조 1호에서 정한 연장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가 인정되는 교원
2. 대학재정 기여 또는 대학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교원
3. 학생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의 교원
4. 신규 임용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제4조(제한조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책임강의담당시수에 학기당 3시간을 추가하여 책임강의담당시수 변경
2. 연구년 제외
3. 재임용 약정시 호봉제 교원의 경우 당해연도 호봉에서 1호봉 감급, 연봉제 교원의 경우 당해연도 연봉에서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4. 개인 연구실 회수 및 공동연구실 배정

**제5조(강의추가배정 미이행시 제한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추가 배정된 시간을 포함하여 변경된 책임강의담당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된 책임강의담당시수를 다음 학기에 가산하여 강의를 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에 추가배정된 책임강의담당시수를 정규 학기 중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절학기 수업을 개설하여 보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강의담당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충족된 책임시수만큼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④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 강의에 대하여는 초과강사료(계절학기 강사료 포함)를 지급하지 않는다.

##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